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의 목적)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내용)

1. 노인의 독립생활 능력을 유지, 강화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노인성 질환 현상의 심화를 억제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 지원
3.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 하도록 한다.
4. 노인들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 경험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5. 가족구성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 하도록 한다.
6. 의료 및 간호서비스: 건강 체크, 한의원, 병원 정기 의료진료 서비스
7. 재활서비스: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8. 급식서비스: 일일 식사 3회, 간식 2회를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및 관리
9. 위생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10. 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11. 심리·사회증진서비스: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12.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생일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13. 프로그램 개발사업: 홍보, 가족간담회 및 운영위원회, 직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 등 시설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14. 기타 :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

(사업의 대상)

입소대상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다음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장기요양 1~2등급자
2. 장기요양 3등급의 자 중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서비스내용 및 비용)

서비스내용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2. 급식 및 목욕 서비스.

3.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및 치매예방서비스.
 4. 지역사회자원 발굴·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5. 입소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 가. 위의 서비스는 장기요양의 급여에 포함되는 서비스로 그에 대한 별도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2의 급식 서비스는 식재료비 및 간식비를 별도로 청구하여 수납한다.
- 나. 그 외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호기간)

보호기간은 6개월 이상의 장기로 하며, 장기요양의 급여 한도 내에서 입소자와의 서비스 계약에 의해 결정되고 제공된다.

(입소정원)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9명으로 한다.

(입소자 모집방법)

1. 입소자 모집은 시청, 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 노인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의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인터넷 게시, 현수막 게시, 발굴 등에 의한다.
2. 본 요양원은 불법, 편법 등의 방법으로 입소자를 부당하게 모집하지 않는다.

(사업의 입소계약)

본 요양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계약한다.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 한다.
2.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구분			금액(원)	세부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1등급	1,739,520	72,480원x30일x80%=1,739,520원
		2등급	1,614,000	67,250원x30일x80%=1,614,000원
		3등급	1,488,000	62,000원x30일x80%=1,488,000원
본인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1등급	434,880	72,480원x30일x20%=434,880원
		2등급	403,500	67,250원x30일x20%=403,500원
		3등급	372,000	62,000원x30일x20%=372,000원
	식재료비		342,000	3,800원x3회x30일=342,000원
	이·미용비			자원봉사 서비스일 경우 무료
	등급 외 입소자비용		1,500,000	50,000x30일=1,500,00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가.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예외로 한다.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및 매 반기별 서비스 이용에 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욕구를 서비스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의무와 사후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확인시켜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

나. 입소자(보호자)가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다.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라. 입소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마.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보호자가 입소자들 앞에서 요양원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동이나 난동을 부렸을 때

6. 기타 필요사항.

(사업의 이용료 및 변경절차)

1.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결정한다.

2. 급여 외 비급여 항목은 식재료비 및 간식비 이·미용비 등으로 한다.

3. 3인실 외의 2인실 및 1인실의 입실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청구한다.

4. 요양원은 입소자와의 계약 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고 수납한다.

5.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소자와의 계약 변경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사업의 의료조치 및 비용처리)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의 배상책임)

1.요양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요양원이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입소자 및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요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요양원은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등 사고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3.이와 같은 내용은 서비스 계약 시 입소자 및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제14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요양원은 침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사무실 등 시설물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 입소 계약 시에 입소자 및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요양원은 입소자의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입소자 및 가족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